부마민주항쟁 26주년 정신계승대회
"증언대회" 박정희 통치기의 국가폭력 사례

· 주　최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마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자료제공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주공원
· 일　시 : 2005년 10월 16일(일 14~16시
· 장　소 : 민주항쟁기념관 큰방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02.

소급입법 피해자

2대악법반대투쟁 사건

이종석

박정희 구테타 시기
(1961년 5·16 전후)의 국가폭력

02

부산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공명선거실천운동부산협의회 상임대표
한국일본문제연구학회 회장

박정희 쿠테타 시기(1961년 5 · 16 전후)의 국가폭력

박정희 쿠데타로 혁명재판부에 서게된 이종석 박사님과 짧은 시간이지만, 교원노조 운동과 2대 악법 반대투쟁, 419혁명이후 한국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1시간가량의 인터뷰를 글로 옮긴 대화 내용입니다.

임현택 : 교원노조 운동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이종석 : 4 · 19 혁명으로 인해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고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어요. 시민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고,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독재사회지 않습니까? 4 · 19는 독재를 몰아낸 것이지요 이승만 시절에는 교사들이 정치적인 도구화가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 가정방문을 시켜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자유당 정책을 홍보하도록 하기까지 했거든, 교원노조는 이런 교사를 정치도구화 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교사들의 정치적 독립화와 교사들의 신분과 경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4 · 19 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결성하기 시작했어요 1960년 5월 2일에 미화당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준비위원회를 20여명 모여서 결성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조직원장을 맡게 된거예요 그때는 부산시도 경상남도 소속이였거든요, 경상남도 부산시였지,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경상남도 전체가 하나의 통일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었고, 부산을 시작으로 진주, 마산, 창원, 진해에서 교원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준비위원회에서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교원노조를 조직화 할 때 학교에 분회를 만드는 일을 많이 도와줬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학교에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교원노조 경상남도 위원회를 만드는데, 나를 위원장으로 추대한거에요 그게 8월 2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임현택 :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이종석 :그때가지 통계를 보면, 경상남도가 회원수는 제일 많고, 경상북도가 학교수가 제일 많았어요, 경상도가 교원노조의 핵심이였지 교원노조를 합법화하는 투쟁을 시작했지, 교원노조를 부산시에 신고하면, 경상남도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데, 부산시장은 신고서를 접수해줬는데 경상남도에서 수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산시장도 그렇고 경상남도 도지사도 민선이였고 훌륭한 분들인데 장면정부에서 수리하지 마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거야, 도지사가 "내가 그만두지 않은 이상 수리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했어요 본질적으로, 장면정부에게 문제가 있었던거지, 그래서 교원노조 500명이 서울로 올라갔고 옛날 중앙 정부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철야농성도 했어요 3일째되는날 밤에갑자기 차량 수십대가 와서 경찰들이 무 뽑듯 잡아가는거야, 나도 그때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노동단체들이 모여서 교원노조 합법화 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합법화 투쟁을 진행했어요

임현택 : 투쟁위원회로는 그렇게 오래동안 감옥에 가시지 않아도 될듯한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종석 :4 · 19 혁명 이후에 민주화의 요구가 자주 통일의 요구로 상승되었거든요 남한, 북한 대학생들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학생회담을 하자는 운동을 했어요, 그때 교원단체들도지지 성명을 내고 학생들의 통일회담을 지지하게되었는데, 이걸 문제로 삼은거지 또 하나는 장면정부가 2대 악법, 그러니까 '반공임시 특별법' 과 '집회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 을 만들게 되었는데, 민중들의 민주적인 요구를 그대로 둑살한거지. 4 · 19 혁명 이후에 사회운동의 흐름이 자주적인 통일흐름(남북학생회담,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으로 나타나니까, 장면 정권이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 사회운동의 흐름을 꺽어 볼려고 했던거지요. 그래서, 2대악법 반대 투쟁위원회도 만들어지게 되고 노동단체, 청년단체, 시민단체들이 많이 결합했어요, 철도노조하고 통민협, 민민협등 많은 단체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교원노조는 노동조합으로 가입을 했었지요. 그러나가 5 · 16 군사 구테타가 일어난거야 5 · 16 군사 쿠테타가 일어나고 나서 이튿날 그러니까 5월 18일에 나를 잡아가더군, 중부경찰선가 그랬어요 쿠테타가 일어나고, 박정희가 문제있는 사람들은 다 가두었거든 교원노조만해도 1700명 정도 됐을거에요 , 부산시내 학교들이 수업을 다 못해서 오전 수업만 했다고 하니까, 그때 부산시 사찰분실장, 검찰청 공안검사부장, 헌병사령부 공안책임자, 보안사령부, 계엄사령부에서 합동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서울로 송치하는 문제를 결정했어요 교원노조로 잡혀온 사람들보고, 내가 위원장이니까 내가 다 시켜서 했다고 해라고 했어요, 실제로 12명만 서울로 송치되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되었고... 그러고 12월에 나 혼자 기소되고 나머지는 다 석방이 되었어요 12월에 혁명 재판부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수석부위원장 15년을 선고 받고, 사무국장이 10s년, 내가 7년, 나머지 3명이 5년씩 선고를 받았어요

임현택 : 죄목이 어떻게 됩니까? 신문과정에서 고문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이종석 : 5 · 16 군사 쿠테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우리를 빨갱이로 몰았어요 재판 판결문에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북괴를 이롭게 한자라고 나와있어. 교원노조가 불법단체니까, 불법단체를 만들어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괴를 이롭게 했다. 학생들이 남북회담 운동을 한 것이 북괴를 이롭게 한것인데 이를 지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북괴를 이롭게 했다. 2대악법 반대 투쟁위원회에서 중심된 활동을 한것도 결과적으로 북괴를 이롭게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결과적으로 북괴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 이전 법에는 없었는데, 혁명재판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소급시킨거에요 명백한 헌법위반이지 박정희가 우리를 빨갱이로 몰려고 고문도 많이 했어, 특히 3일이고 4일이고 잠을 못자게 하는 것은 정말 고통이였어요.

임현택 : 선고는 7년을 받았는데 2년 8개월만에 출소하시게되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출소이후에 활동도 소개부탁드립니다.

이종석 :박정희가 혁명사령부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특별사면을 했어요, 우스운 일이지 어찌되었든 출소하고 교원 노조 복직운동을 했어요, 출소하는날 국제신문기자가 형무소에 마중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그때 교원노조 복직운동을 하겠다고 한 내용을 신문에 실기도 했어요 이후에 복직운동과 함께 나도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자료는 이종석박사님의 소장하고 계신 2대악법 반대투쟁 관련 자료입니다.

2대악법 반대투쟁

1. 사회운동의 방향

(1) 자유민권투쟁에서 민족통일운동으로

4 · 19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2차대전 종전 후 세계체제 재편과정에서 미독점 자본주의시장으로 편입을 강요 당하여 냉전이데올로기로 분장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특수조건하에 저류하고 있던 사회구조적 제모순의 직접적인 반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변혁과정을 겪고 난 후에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환경이나 국내의 권력지배에 있어서나 본질적 변화는 일어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승만정권이 붕괴한 후 허정과도정부를 거쳐 7 · 29총선고로 정권을 장악한 민주당 신파인 장면정권도 내재하고 있는 민족적, 사회경제적 제모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력집단이 아니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러나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승리하였던 학생운동과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는 운동의 방향을 자주적인 민족통일운동으로 조직을 강화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1960년 9월 18일 발기하여 10월 1일 결성된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에 이어 이 조직은 서울에 9개 대학, 지방에 4개 대학으로 확대되어 민족의 자주적 통일운동에 커다란 계기를 부여하였다.

한편 대구에서 발족한 항일독립투사 안경근 선생 주도의 민족자주통일연맹도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본격적인 대중운동단체로서의 역량을 갖추어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보적 정당에서는 남북교류를 제창하여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통일운동의 전개과정은 분단체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역사적 평가에 기초한 것이다. 6 · 25의 민족상잔의 비극과 자유당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족적 억압통치도 민족분단의 냉전이데올로기의 소산물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이 나라의 민주화 즉 4 · 19의 완성은 분단을 극복하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61년 3월에는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을 통하여 반외세를 외치는 민족자주의 기치는 점점 그 열기를 더해 갔었다. 대구에서 개최되었던 2 · 28학생시위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에서도 주된 구호는 학원의 자유수호와 민족의 평화적 남북통일이었다.

이제 일반대중들은 그들이 놓여있는 역사적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반민족적 · 반민주적 역사의 현장이 오로지 남북분단에 연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반독재민주화의 물결은 자연적으로민족의 자주적 통일의 방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 여론의 흐름

이와 같은 반외세 자주적 민족통일운동은 외세에 의존하여 냉전체제에 편승한 집권세력의 지지기반을 뿌리부터 위협하는 일이었다.그렇지 않아도 정치적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민주당정부는 이와 같은 광범위한 민족자주통일세력의 활발한 움직임에 위협을 느끼고 이러한 흐름을 잠재우기 위하여 법률적 대응으로 착수하였다. 이것이 '반공임시특별법'과 '집회 ·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데모규제법)' 등 소위 반민주 2대악법을 입법화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알려지자 전국의 언론, 진보적인정당, 사회단체, 노동단체 등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하였다.더구나 노동단체를 자극한 것은 '반공임시특별법안' 제13조 2항 규정이었다. 이 조항은 노동단체의 "쟁의기간 중에는 현행범 이외는 여하한 이유라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않는다"라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여론을 반영하여 전국의 언론들은 사설을 통하여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다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하마터면 우리 사회를 일대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영남일보』3월 12일자).

단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헌법위반이 아닐 수 없으며 국민인 주권자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순종 일방의 피치자의 위치에 놓고만 법률……(『대구일보』3월 9일자).

정부가 꾀하는 반공법 시안은 오늘의 범적 견해와 국민의 권리 감정으로 보아 합당하지 못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향신문』3월 11일자).

반공이란 명분을 앞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장면내각의 폭거……(『민족일보』3월12일자).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는 사람을 오직 언동이 공산당과 유사하다고 해서 기소 처벌하는 사태가 온다면 반공특별법은 공산당을 막는 법률이 아니라 공산당이 아닌 사람들을 공산당으로 만들어내는 법률이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일보』3월 9일자).

……제7조는 건전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악용할 여지가 많다. 국민은 신성한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으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이익분배균점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데 경제적 약자에게 용인된 최소한도의 권리를 빼앗고 싶거든 차라리 헌법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3월 11일자).

……야당의 일부에서는 맹렬히 반대하여 제안하는 것마저 거부할 태도라고 한다. 그 이유는 내세운 것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정부의 무능을 은폐하고 장기집권을 꾀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야당의 이와 같은 태도에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반공의 미명하에 야당탄압을 능사로 알던 자유당시대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
(『동아일보』3월 12일자)

2. 반민주악법 반대투쟁

(1) 반민주악법 반대 입장

교원노동조합이 이때까지 걸어온 길은 그들이 발기격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원의 민주화'와 '교육의 자주성'을 쟁취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태동에서부터 반민주세력집단과 교조존립을 위한 투쟁을 치열하게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과도정부의 포악한 탄압과 해체공작에 싸워야 했고, 민주당치하에서도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는 투쟁을 계속해야 했다. 학원의 민주화와 교육의 자주성 쟁취는 교사들의 단체 활동 없이는 이룩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그들이 확보한 합법적인 공간과 조직을 사수하는 길만이 그들이 목적한 바로 가는 길이었다. 이에 따라 혹독한 탄압 · 반대 속에서도 교직을 건 부당인사반대투쟁, 다시 생사를 건 노동조합법 개악반대투쟁을 등을 거치면서 학원정화투쟁과 기타 교육실천운동을 전개해하였다. 또한 법정수당쟁취라는 경제투쟁을 학원정화 차원에서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교원노동조합운동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은 교사로서의 양심의 발로에 의한 교육계의 혁신운동적 측면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었다. 그것은 제자들 앞에 떳떳한 교사로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쟁취에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노동조합주의'와는 불발에서부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탈노동조합주의' 적인 정치투쟁을 바란다는 것은 조직 내부 사정으로나 조직 외적인 일반적 정치정세로 보아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투쟁이나 활동전개도 일정한 한계 내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실천적인 단체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들은 중대한 사실인식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북분단이라는 냉혹한 정치적 현실이었다. 이 나라의 모든 민주주의 운동이 싹을 틔우다가 중간에 모진 서리를 맞고 자지러지는 까닭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분단된 땅에서 지배 권력의 용공조작은 생명에 대한 비상과도 같았다. 이미 운동세력에 대한 이러한 징조가 여러 차례 압제자들로부터 있기도 했다. 교원노조는 이와 같은 간악한 '덫'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나머지 일반노동조합과의 연합과 제휴는 할지언정 진보적인 정당 및 사회단체와의 관계는 의식적으로 일정한 선을 그어 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원을 배척하는 입장은 될 수 없었다.

1961년 3월 정치적 중대한 현안으로 제기된 반민주악법인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의 입법기도는 장면정권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서 교원노조도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전국의 언론계가 이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어 모든 정당, 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이 민주당 장면정부의 불순한 입법기도를 맹렬히 규탄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도에 들어서면서 교원노조는 학원정화운동 차원의 경제투쟁인 법정수당쟁취와 학원 내에 그대로 도사리고 있는 반혁명 교육자의 숙정작업에 조직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3월 상순에 들어서면서 반공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의 입법기도에 대하여 교육노조도 대응하는 태도를 신중히 검토하면서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경북교원노조는 의장단회의를 소집하여 두 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법안은 또 다시 우리 사회를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어 민주적인 사회단체의 운동을 질식시키고 아울러 노동조합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지배 권력의 음흉한 정치적 흉계가들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같은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3월 8일 소집된 제6차 전국투쟁위원회에서는 계류중인 설립신고증 교부와 법정수당 지급투쟁에 관한 투쟁전략, 전행중인 교원노조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숙의하고, 반공특별법과 데모규제법에 대한 태도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사태의 추이를 더 관망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 소위 '2대악법'이라고도 불리우는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에 대한 한국교원노조의 반대 입장의 결정은 13일 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반대 입장이 결정되자 "반공임시특별법 자체가 노동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수 있는 악법임이 분명하므로 만의 일이라도 이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된다면 교원노조는 교원노조의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노동법개악 때와 같이 극한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 법안 반대의 범국민운동에 가담할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동법안 제 7조 "근로자는 쟁의기간 중에는 현행법 이외에는 여유한 이유...

교조활동 중심인물

중등 - 이종석, 조오흡, 박노헌, 김대상, 김의환, 신소야
초등 - 조인식, 윤증학, 박욱현, 김종원, 전선기, 김홍주, 장춘호, 조명환

경남교원노조연합회

- 위원장 - 이종석
- 부위원장 - 박은백, 김창범, 박욱현
- 총무부장 - 이덕우
- 조직부장 - 김일구
- 선전부장 - 심상필
- 쟁의부장 - 김우현
- 법규부장 - 김대상
- 조사부장 - 왕수권
- 문화부장 - 신소야
- 체육부장 - 정규민
- 감찰부장 - 전선기
- 후생부장 - 배한권
- 섭외부장 - 백남현
- 여성부장 - 박기숙

혁명재판소 송치자(서울) 1960년 7월

이종석, 이태길, 조오흡, 박노현, 신소야, 조인식, 박욱현, 윤증학, 김창범, 김종원, 장춘호, 최달영

※ 송치와 더불어 부산, 마산, 진주 등 경남일원에 고속된 교원노조관련자 전원 석방됨

※ 혁명재판소에 기소된 경남교원노조연합회 위원장 이종석을 제외한 송치자(서울) 1960년 10월, 전원 석방됨.〈 국가보안법 연구 - 박원순 글중에서...〉

2) 제2공화국시기

4 · 19 이후 전국의 초 · 중 · 고 · 대학의 교원들은 자유당정권에 철저히 이용당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교육이 정치권으로부터 자주성을 회복하고 모든 정치적 당파에서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참된 교육의 자주성과 학원의 자유는 4 · 19혁명 과정에서 국민주권투쟁으로 쟁취한 성과를 보장하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이하 교원노조)를 설립하였다. 민주당정권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좌경으로 매도하려는 공작을 진행하고 있었고, 교원노조측은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발발한 5 · 16쿠데타는 양측 모두를 궤멸시켜 버렸고, 민주당정권이 준비하던 좌경매도공작은 쿠데타군부가 교원노조를 수사하는 데 그대로 옮겨져 사용되었다.

물론 제2공화국 기간 중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교육탄압은 없었지만,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깊은 사건으로는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 등 2대악법을 반대하는 대구역전에서의 4 · 2투쟁사건으로 교원노조 간부 김문심씨(경북연합회 위원장)가 1961년 4월 2일 소요죄로 구속된 사건이 있다.

3) 제3공화국시기

5 · 16 후 군정시기

1961년 5 · 16쿠데타로 들어선 군부는 이듬날부터 교원노조 간부들을 대거 연행하기 시작하였다. 1,500명의 교원들을 구속하여 민주당정권이 진행하고 있던 각본에 따라 용공단체 여부를 수사한 군정당국은 2~3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교원노조가 용공단체가 아님이 명백해지자, 조합원내에서 간첩을 조작하기 위해 이북출신 교육자들에게 촉수를 뻗었다. 월남 시에 남한공산화의 임무를 띠고 교육계에 침투했으며 공산혁명의 임무수행을 위해 교원노조에 가입했다는 내용의 자백을 받아내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음모에 의해 평양출신인 인천 경기수산고등학교 훈육주임 교사 이동질씨(교원노조 경기도연합회 위원장)가 이북출신이라는 이유로 치명적인 고문을 받고 거의 죽게 되어 출옥하였으나, 억울함과 좌절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간첩조작에 실패한 군사정권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특수반국가행위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인원은 구속인원 1,500명 가운데 9명에 불과했으며, 공소사실은 2대악법 반대투쟁을 했다는 사실과 남북학생회담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의결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사실뿐이었다. 다음은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사건의 공소장 내용이다.

4 · 19이후 사회질서가 극도로 문란하고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던 언론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빙자하여 용공적인 소위 혁신계 정당 · 사회단체가 속출하게 되자 이에 편승하여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기한다"는 미명하에 교원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 정부에서 문란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공산간첩의 침투를 방지하며 국내에서 준동하는 오열을 색출하여 반공의식을 고취하고 반공태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반공심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을 제정키 위한 입법준비를 할 즈음에 제하여 동법 제정이 공산간첩 침략을 분쇄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반공의 국가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야당 내지 교원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구실로 동법 제정을 반대키 위한 투쟁을 전개 …… 하고, ……전국학생민족통일연맹의 활동을 지원하며 학원 외에서 통일을 촉진하는 국민운동에 선봉적 계몽대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내용의 한국통일문제에 관한 결의문을 작성, 등사하여…… 결의안건으로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시를 무시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고무 · 동조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다.

당시 기소된 교원노조 간부들과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사건 : 강기철(총연합회 수석부위원장, 징역 15년), 신동영(총연합회 선전부장, 징역 10년), 이종석(경남도연합회 위원장, 징역7년), 이목(총연합회 사무국장, 징역 10년), 신우영(경북연합회부위원장, 징역 5년), 조영진(경북연합회 부위원장, 무죄).

② 대구지구교원노동조합사건 : 김장수(대구지구중등교조 위원장, 무죄), 여학룡(대구지구중등교조 부위원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③ 2대악법반대 연대투쟁사건 : 김문심(경북연합회 위원장, 무기징역).